

## 2019년도 제 1 회 학부모회 회의록

안 건	1. 학부모회 규정 개정의 건 2. 아침 교통 안전도우미 활동의 건		
일 시	2019년 3월 20일 수요일 11시 30분~	장 소	강당
참석자	참석 : 학부모회 회원 , 장기영 교감, 담당교사 이희수		
회의내용	<p>1. 학부모회 규정 개정의 건</p> <p>가. 규정 추가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제7조 3항 내용 추가 -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</li> <li>2) 제9조 5항 신설 - 회장과 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 혹은 회장이 10일 이상 임시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 회원의 3분의 1 이상 서명 및 대의원회의 회원의 3분의 1의 확인이 있을 시 임시 총회는 소집 권자 대표가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.</li> <li>3) 제11조 10항 신설 - 학부모회 임원에 사퇴한 경우 다음 회기에는 학부모회 및 대의원회에 입후보를 금한다.</li> </ul> <p>나. 법률 자문 검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제7조 3항 내용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2) 제9조 5항 신설 내용을 제 9조 7항으로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학부모회 회원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되었을 때</li> <li>2. 제 9조 3항 제 2호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10일 이상 임시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3) 제11조 10항 신설 내용을 제9조 8항과 제 11조 10항으로 신설 제9조(총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⑧ 회장 또는 부회장인 회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경우, 그 회원은 다음 회기에 학부모회 및 대의원의회에 입후보할 수 없다.</li> </ul> </li> </ul> <p>제11조(대의원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⑩ 대의원인 회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경우, 그 회원은 다음 회기에 학부모회 및 대의원회에 입후보할 수 없다.</li> </ul> <p>다. 법무법인 수인에서 법률자문한 내용대로 규정 개정하도록 함.</p>		

2. 아침 교통 안전도우미 활동의 건

=>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아침교통 안전도우미회 활동을 기존 대로 전학년 전학부모 대상으로 실시

3. 기타 사항

- 가. 학교홈페이지에 개정된 학부모회 규정 및 총회 회의록 게시
- 나. 4월 5일 학부모 공개 수업일에 대의원 회의 실시

기록자	이희수	이희수	학부모회 회장	손명옥	손명옥
-----	-----	-----	---------	-----	-----